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87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6.

발 의 자 : 서미화 · 김남희 · 장종태
조계원 · 박지원 · 이수진
윤건영 · 김 윤 · 이주희
최혁진 · 정혜경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공유주방에서 제조·가공·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여 동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.

이에 보험회사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체결 거부 제한 등 보호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거부 제한 및 보험금지급 청구권 압류 금지 규정 신설을 통해 보험 가입 대상인 공유주방 운

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(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).

나.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계약체결 거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의무 이행을 유도함(안 제101조제1항 신설).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(이하 “보험회사”라 한다)는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. 다만,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가 보험 계약의 체결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③ 이 법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제101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책임보험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책임보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의2(보험 가입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4조의2(보험 가입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(이하 “보험회사”라 한다)는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. 다만,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가 보험 계약의 체결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 <u>③ 이 법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</u>
<u><신 설></u> ② (생략) 제10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<u>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</u> 제101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.

<u><신 설></u>	<u>1.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</u> <u>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와</u> <u>의 계약체결을 거부한 보험</u> <u>회사</u>
<u>1. (생 략)</u>	<u>1의2. (현행 제1호와 같음)</u>
<u>2. ~ 4. (생 략)</u>	<u>2. ~ 4. (현행과 같음)</u>
<u>② ~ ⑤ (생 략)</u>	<u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u>